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9월 4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9월 6일

3. 제안이유

- 민원신청시 행정편의 또는 단순관행에 따라 불필요한 날인을 요구하므로써 인장 미지참자가 인장을 가지러 돌아가거나 새로 조각하는 등 민원인 불편 초래
- 또한 민원신청서 사용하고 있는 인장은 대부분 누구나 손쉽게 조각이 가능하여 공신력 저하
- 국민생활양식의 선진화와 경제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인장사용제도를 개선하여 본인 서명에 의한 신용거래관행의 유도, 확산이 필요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식중 신청인의 신청의사 확인을 위하여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인장은 물론 서명, 무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형식 "예시"

현 행	개 정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인)

5. 검토의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내무부 민원행정쇄신지침에 의거 신분변동 및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인감
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민원, 기타특별한 목적으로
법령상 날인을 요건으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등에서의 각종 민원신청시 불필요한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므로써

국민생활 양식의 전환과 경제생활의 다양화 등에 시대를 같이하여 각종민원
서식 작성의 용이성 및 간소화를 위하여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으로도 혼용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기존민원양식의 날인란을 개정하는 내용
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좀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6. 참 부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1부.